

1.약관명: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_채권유동
화목적_포함)

2.시행일: 2025.02.21.

3.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미적용

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6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p> <p>① 본인은 ‘대출상담 및 신청서’ 기재내용과 모든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p> <p>②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합계액(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소득기준)이 ()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p> <p>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포함)(이하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이하 “미성년 형제·자매”)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가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이하 “추가주택”)하는 경우 정해진 처분기한 내 추가주택을 처분할 것을 확약합니다.</p>	<p>제6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p> <p>① 본인은 ‘대출상담 및 신청서’ 기재내용과 모든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p> <p>②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합계액(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소득기준)이 ()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p> <p>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포함)(이하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이하 “미성년 형제·자매”)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가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이하 “추가주택”)하는 경우 정해진 처분기한 내 추가주택을 처분할 것을 확약합니다.</p>	<p>대출 자격요 건 및 사후관 리 부분 강조 표시</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④ 본인은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 신생아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추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정해진 처분기한 내 추가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속합니다.</p> <p>⑤ 본인은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및 세대원이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단,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한 경우 본인은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및 세대원,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p> <p>⑥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p> <p>⑦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u>전입세대열람표</u>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 주택에 거주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본인이 만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 세대주로서 부양가족 합가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p>	<p>④ 본인은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 신생아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추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정해진 처분기한 내 추가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속합니다.</p> <p>⑤ 본인은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및 세대원이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p> <p>단,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한 경우 본인은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및 세대원, 신생아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모가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p> <p>⑥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p> <p>⑦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u>전입세대열람표 및 주민등록등본</u> (이하 “<u>전입증빙서류</u>”)을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 주택에 거주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본인이 만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 세대주로서 부양가족 합가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p>	<p>전입증빙 제출서류 명확화 및</p> <p>대출 사후점검 내용 강조 표시</p>

<p>1개월 이내에 부양가족 또한 본건 담보 주택에 전입을 완료하고 부양가족의 전입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p>	<p>1개월 이내에 부양가족 또한 본건 담보 주택에 전입을 완료하고 부양가족의 전입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p>	
---	---	--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p> <p>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공사)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공사)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공사)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를 적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6조제6항, 제7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한날로부터 1년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입양아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해당 입양아를 파양하는 경우 <p>②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p>	<p>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p> <p>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공사)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공사)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공사)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를 적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6조제6항, 제7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한날로부터 1년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입양아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해당 입양아를 파양하는 경우 <p>②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p>	<p>기한이익상실 사유 안내 강화를 위한 강조 표시</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13조 결혼사실 증명</p> <p>① 본인은 결혼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기에 본건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기로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동의합니다.</p> <p>②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p>	<p>제13조 결혼사실 증명</p> <p>① 본인은 결혼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기에 본건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기로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동의합니다.</p> <p>②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p>	<p>기한이익상실 사유 안내 강화를 위한 강조 표시</p>